

2021. 12. 27.(월)

이장회의 서면자료

12월 里長會議

# 會議資料



彌 助 面





# 목 차

## ○ 총 무 팀

1.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「사회적 거리두기」 방역수칙 안내 4
2.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 마감일 안내 ..... 4
3. 겨울철 수도시설 동파방지 홍보 ..... 5
4. 미조면 마을단위 신규급수공사 신청 ..... 5
5. 지방세 납부 홍보 ..... 6

## ○ 맞 춤 형 복 지 팀

1. 연말 이웃돕기 지정기탁물품 배분 ..... 7
2. 현금지정기탁 대상자 추천 및 지원 ..... 7
3. 통합문화이용권(문화누리카드) 사용기한 종료 안내 ..... 7
4.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홍보 안내 ..... 8

## ○ 산 업 경 제 팀

1. 2022년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홍보 협조 ..... 9
2. 숨은 쓰레기 찾기 캠페인 실시 홍보 ..... 9
3. 2021 ~ 2022년 산불 방지 및 예방을 위한 홍보 및 협조 · 10

# 총 무 팀

## 1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'사회적 거리두기' 방역수칙 안내

- 기 간 : '21. 12. 22.(수) 0시 ~ '22. 1. 2.(일) 24시
- 주요방역수칙

공통 방역수칙	
마스크 착용	▶백신접종 완료자도 실내·외에서 마스크 착용
기본 방역수칙	▶방역수칙 게시·안내 ▶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▶출입자 명부 관리(전자출입명부·안심콜 등) ▶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 ▶일 1회 이상 소독
모임·행사 집회	
사적 모임	▶4명까지 모임 가능(미접종자·접종완료자 구분 없음) ▶(식당·카페에서는) 4명까지 모임 가능 - 단,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(미접종자 1인, 단독 이용만 가능)
기타 행사·모임	▶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49명 까지 가능 ▶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 ~ 299명 까지 가능 * (접종완료자 등) : 접종 완료자, PCR검사 음성자(48시간 이내), 완치자,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

## 2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 마감일 안내

- 신용·체크카드, 선불카드 지역상품권(모바일, 카드형) : 12. 31.(금)까지 사용 가능
- 지역상품권(지류형) : 12. 31.까지 사용 권고

### 3 겨울철 수도시설 동파방지 홍보

- 마을방송 : 일 2회(오전9시, 저녁6시) - 마을자체적으로 적의조정
- 마을이장님 협조 사항 : 마을방송 홍보
- 홍보 방송문(안)

-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

수도시설 동결 및 동파 예방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.

오늘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짐에 따라 수도시설이 얼거나 파손될 우려가 높습니다. 따라서 가정 내 수도 계량기 보온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그리고 앞으로도 기온이 크게 떨어짐에 따라 수도가 얼기 쉬우니 장시간 외출할 경우나 장시간 수도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물이 약하게 흐르도록 수도물을 틀어 놓으시기 바랍니다.

또 보호통 안에 고인 물은 제거하시기 바라며,

스티로폼이나 헨웃 등 보온재로 보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

언 수도를 녹이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비용이 발생하지만

간단한 조치로 큰 예방효과가 있으니 사전에 점검,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. “반복”

### 4 미조면 마을단위 신규급수공사 신청

- 반드시 마을단위로 신청(마을인구 대비 80% 이상인 경우 접수가능)  
⇒미조면행정복지센터 접수 ⇒ 군청 환경물관리단(상수도팀)에 발송
- 급수신청 문의사항  
- 상수도팀 정지영 주무관 ☎(055)860-3326
- 마을이장님 협조 사항 : 마을방송 홍보



## 5 지방세 납부 홍보

○ 체납현황(10. 23. 기준)

(단위 : 건/천원)

세 목 명	체납현황		비 고 (부과월)
	건 수	금 액	
합 계	453	18,303	
등록면허세	21	197	1월
자동차세	78	7,373	6월·12월
재산세	236	7,579	7월·9월
주민세	110	1,501	8월
지방소득세	8	1,653	수시

- 체납세 납부 및 자동이체 신청 마을방송 등으로 안내
- 마을별 주요 체납자 납부독려 협조

## 맞춤형복지팀

### 1 연말 이웃돕기 지정기탁물품 배분

- 개요 : 연말을 맞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기탁된 물품을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배분
- 물 품 : 감귤(5kg) 50박스, 이불 2채, 김치(5kg) 30박스, 손뜨개 목도리 15개
- 기 탁 자 : 한국토지주택공사, 경남은행, 천해마트, 손뜨개재능기부 봉사단
- 지원대상 :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- 문 의 처 : 맞춤형복지팀 반시은 (☎055-860-8213)

### 2 현금지정기탁 대상자 추천 및 지원

- 개요 : 연말을 맞아 미조중앙교회 등에서 기탁된 성금을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배분
- 기탁금액 : 금2,350,000원
- 기 탁 자 : 미조중앙교회, 한길건설, 경상남도레미콘공업협동조합
- 지원대상 :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3명
- 문 의 처 : 맞춤형복지팀 반시은 (☎055-860-8213)

### 3 통합문화이용권(문화누리카드) 사용기한 종료 안내

- 지원내용 : 문화예술·여행·체육· 분야에 사용 가능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지원 개인당 카드 1매 발급, 연 10만원 지원
- 지원대상 :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- 사용기간 : 2021. 12. 30.(목)까지(사용기간 이후 잔액 자동 소멸)



- 협조사항 : 마을방송 등으로 잔액보유자 소진 독려 요청
- 문 의 처 : 맞춤형복지팀 정여진 (☎055-860-8214)
- ※ 미조면 발급 및 이용 현황 (2021. 11. 25. 기준)
  - 총 발급자 수 : 178명
  - 지원금 잔액 보유자 수 : 43명 (잔액 미사용자 수 9명)

**4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홍보 안내**

- 개 요 :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
- 사업대상 :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우선순위로 선정 (단,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는 자는 제외)
  - \*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, 베지밀, 식사배달서비스 중복 불가
- 지원내용 : 안전지원 · 사회참여 · 생활교육 · 일상생활 서비스 지원
- 신청방법 : 신청자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- 협조사항 : 노인맞춤돌봄 신청 대상자 발굴
- 문 의 처 : 맞춤형복지팀 정여진(☎860-8214)



# 산 업 경 제 팀

## 1 2022년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홍보 협조

- 접수기간 : ~ 12. 31.(금)까지
- 사업기간 : 2022. 1. 10. ~ 2022. 5. 6.(예산사정에 따라 변동가능)
- 모집인원 : 17명(남해군)
- 신청자격 : 만18세 이상 근로능력 있는 군민으로 취업취약계층, 코로나19로 실직·폐업 등으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
- 사업내용 : 코로나19 관련 출입자 관리 및 방역지원  
(보건소, 선별진료소, 군청사, 노인복지관, 농업기술센터, 남해공용터미널)

## 2 숨은 쓰레기 찾기 캠페인 실시 홍보

- 목적 : 『2022년 남해군 방문의 해』를 대비하여 농경지·야산 등 숨어있는 쓰레기를 찾아내어 정비코자 함.
- 기간 : ~ 12. 31.(금)
- 내용 : 숨은 쓰레기 신고 시 불법투기자 조사 및 수거·정비 실시
  - 투기자 적발 시 : 청결이행명령(또는 과태료 부과)
  - 투기자 미적발 시 : 수거 및 청소 예정
- ※ 투기자 적발 시 신고 포상금 지급 : 건당 5,000원(화전화폐)
- 협조사항 : 마을 구석구석 방치 폐기물이 신고되어 정비 되도록 주민 적극 홍보



### 3 2021 ~ 2022년 산불 방지 및 예방을 위한 홍보 및 협조

- **기 간 : 2021. 11. 1. ~ 2022. 5. 15.**
- 협조사항
  - 주민 홍보(1일 1회 이상 마을 안내방송 등)
  - 산불감시원이 없는 야간 시간대 마을별 소각 행위 금지 등 유의
  - 산불 및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 협조
- 홍보사항
  - 등산 등 입산 시 인화물질 소지, 담배꽂초 투기 금지, 쓰레기소각 금지
  - ※ 산림과 인접한 논·밭에서 행하는 소각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되는 위법행위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

#### 《산림보호법 제53조(벌칙) 및 제57조(과태료)》

- 산불방화범은 7년이상 15년이하 징역, 과실범은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
- 허가 없이 산이나 인접지에서 불 피운 자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
- 화기, 인화물질, 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거나,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꽂초를 버린 자 등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#### 《산불조심 홍보 방송문》

- 마을회관에서 알려드립니다.
- 주민 여러분께 산불방지에 대하여 당부말씀을 드립니다.
  - 지금은 산불조심 기간입니다.
  - 산불은 사소한 부주의로 일어나며, 입산자의 실화, **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 태우기**와 성묘객 실화에 의해 주로 일어납니다.
  - 산 인근에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을 태우다 적발 될 시 최대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, 산불 발화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,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되오니, 산불 조심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- ※ 우리 모두 다함께 산불을 사전에 예방합시다.
- 감사합니다.